

2026년 서울 소상공인·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서울시에서는 출산·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4. 13.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 소상공인·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
- 사업목적 : 장시간·불규칙 근무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(진입형·성장형·선도형)에 안정적인 출산·양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함
- 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소상공인¹⁾ 및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(진입형·성장형·선도형) 상시근로자 중 3개월~12세 이하 아동 양육자(최대 2자녀까지 지원)
※ 아래 요건 충족
 - ① 영업지(또는 근무지)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
 - ② 신청인(부 또는 모)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
 - ③ 자녀의 출생연도는 2013. 3. 1.부터 2025. 12. 31. 사이에 해당
- 제외대상
 - (중복지원) 동일 사업 수혜자 선정 제외
 - 예시: '24~'25년 선정 후 이용자는 제외됨. 단, 선정 후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
 - (제한업종) 유흥업소 등 용자지원 제한업종 * 붙임 참고

1)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 / 그외 업종: 5명 미만

2

지원 내용

□ 지원내용 : 주간 돌봄서비스, 심야 돌봄서비스

서비스	돌봄 시간	아동연령	지원내용
주간 돌봄	06시~22시	3개월 이상 ~12세 이하	등하원 동행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재우기/깨우기, 위생관리, 돌봄 후 뒷정리, 실내 놀이* 아이 돌봄에 수반 되는 가사 돌봄 포함
심야 돌봄	22시~06시	24개월 이상 ~12세 이하	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재우기/깨우기, 수면·야간 생활 관리 등

※ 선정된 민간 업체별 서비스 제공 내역은 상이할 수 있으며,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□ 지원방법 : 돌봄서비스 제공기관(1개) 선택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요금 지원

○ 돌봄서비스 : 본 사업을 위해 선정된 돌봄 기관 소속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

- 돌봄 기관 정보는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선정 후 ‘탄생육아 몽땅정보통’을 통해 직접 돌봄 기관(1개)을 선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○ 이용요금 지원 : 이용자는 요금 지원(2/3)을 통해 기본 이용료의 1/3만 돌봄 기관에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(이용자 부담 : 지원금 = 1 : 2)

□ 지원한도 : 자녀 최대 2명 지원(1자녀 360만원, 2자녀 540만원)

○ 지원금은 기관의 비용 정산 시 반영되며, 이용자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음

○ 업체 변경은 서비스 이용 중 최대 3회 가능

< 예시: 이용요금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>

아동인원	이용요금	서울시지원	본인부담금
1	15,000원	10,000원	5,000원
2	22,500원	15,000원	7,500원

※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및 지원요금표는 2026년 4월 중 별도 공지 예정

※ 확정된 요금표 외 업체별 기타 서비스 비용 발생분은 100% 자부담 이용

※ 심야돌봄서비스를 본인부담금 할증 부담 없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, 심야돌봄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선택 필수

□ 지원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까지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3

신청요건

□ 신청자격 :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(진입형·성장형·선도형) 상시근로자 중 3개월~12세 이하 아동 양육자(최대 2자녀까지 지원) ※ 아래 요건 충족

- ① 영업지(또는 근무지)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
- ② 신청인(부 또는 모)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
-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. 3. 1.부터 2025. 12. 31. 사이에 해당
- ④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이어야 하며,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이어야 함

※ 서울시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은 진입형·성장형·선도형으로 구분되며, 워라벨 포인트제 가입 여부는 각 기업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필요

□ 제외대상

- (중복지원) 동일 사업 수혜자 선정 제외
 - 예시: '24~'25년 선정 후 이용자는 제외됨. 단, 선정 후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참여 가능
- (제한업종)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

4

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기간 : 2026. 4. 13.(월) ~ 4. 30.(목)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탄생육아 몽땅정보통)

- 신청링크  <https://umppa.seoul.go.kr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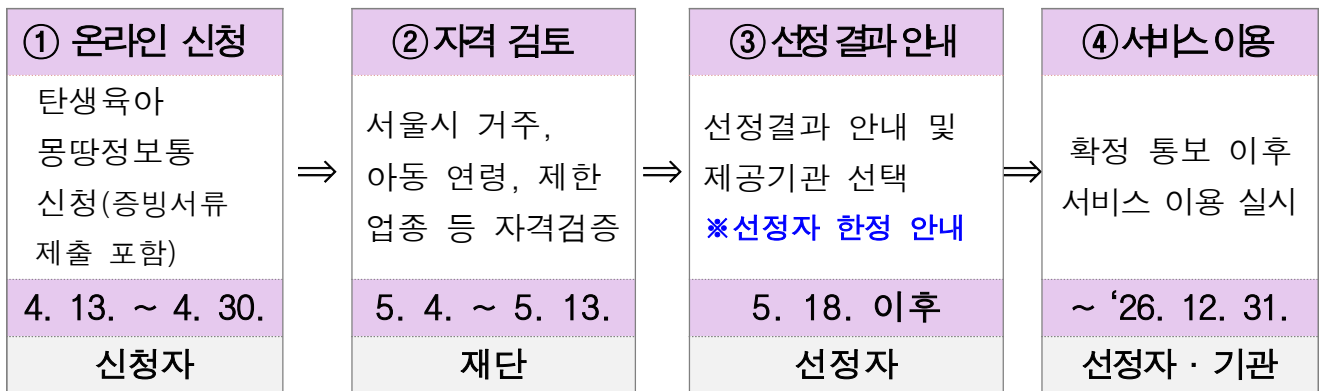
- 탄생육아 몽땅정보통>지원사업신청>육아>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신청

□ 선정결과 : 2026. 5. 18.(월) 예정, 대상자 별도 안내

※ 자격검증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서비스 이용 : 서비스 개시일 ~ 2026. 12. 31.까지

□ 선정절차



-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선정 후 ‘탄생육아 몽땅정보통’ 에서 제공기관 1개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, 확정 통보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 ※ 확정 통보 전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-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돌봄 수요(영유아 가구, 다자녀 가구 등)를 고려하여 선정

□ 제출서류 : 온라인 신청 시 아래 필수서류는 첨부 제출, 그 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연계

구분	소상공인 사업주·종사자	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
필수서류	소상공인확인서	재직증명서
기타	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, 결혼·이민 증빙서류	

- ※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(대상 공통), 사업자등록증명(소상공인 사업주 해당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소상공인 종사자 해당)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에 따라 직접 제출받지 않음
- ※ 기타 서류는 필수서류로 법적 자녀관계 및 혼인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제출
- 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수(유효기간 확인 필수)

5

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며 최종 미승인 처리됩니다.
-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 중 지원이 취소·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이용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은 소상공인(사업주·근로자) 및 워라벨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이용 요금의 2/3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- 돌봄서비스는 본 사업을 위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요금표, 서비스 등을 확인한 후 ‘탄생육아 몽땅정보통’ 홈페이지에서 선택 후 확정 통보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 선택 후,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이내로 선택한 제공기관에 선정자 정보가 전달되며 기관 확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6

문의처

- 담당자 :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업문화조성지원팀
- 연락처 : 02-3280-0312
- 이메일 : ssgong@seoulwomen.or.kr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시 기준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증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